

방 송 통 신 위 원 회

심의 · 의결

안전번호 제2015 - 20 - 094호

안 건 명 [REDACTED]의 개인정보보호 위반 및 이용자 이익
저해 행위 등에 대한 시정조치에 관한 건

피 심 인 [REDACTED]
[REDACTED]

의결연월일 2015. 5.13.

주 문

1. 피심인은 이용약관과 다르게 전기통신서비스를 제공하는 행위, 이용자의 가입의사를 확인하지 않고 이용계약을 체결하는 행위 및 법령이나 이용약관에서 정한 절차를 위반하여 이용계약을 체결하는 행위를 즉시 중지한다.
2. 피심인은 1항의 시정명령을 받은 사실을 시정명령 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에 4단×10cm 또는 5단×9cm의 크기로 1개의 중앙일간지에 평일에 1회 공표한다. 이때, 공표내용 등은 방송통신위원회와 사전 협의를 거쳐야 한다.

3. 피심인은 다음과 같이 업무처리 절차를 개선하되, 구체적인 업무처리 개선내용은 방송통신위원회와 협의하여 정하여야 한다.

가. 외국인을 이동전화 서비스에 가입시킬 때에는 가입신청서 및 외국인 신분증(외국인등록증, 여권 등)을 제시받아 제출서류의 위·변조 여부, 계약상대방 본인임을 확인하고, 상대방의 동의를 받아 부정 가입방지시스템을 이용하여 신분증의 진위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나. 외국인의 이동전화 서비스 가입 등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한다.

1) 가입시 외국인 신분증(외국인등록증, 여권 등)의 위·변조 여부를 확인하고, 외국인 정보인증이 정확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대리점에서 부정가입방지시스템에 입력하는 데이터가 올바른 값인지 여부를 철저히 검사하도록 하며, 성명·외국인등록번호·거소신고번호·여권번호·국적코드·체류기간 등 외국인 정보인증 필수 정보 값이 변경되지 않도록 한다.

2) 이동전화 서비스를 이용 중인 외국인의 출국·사망 여부 등을 부정 가입방지시스템을 통해 확인하여 법령과 이용약관의 규정에 따라 처리한다.

다. 법인 이동전화 회선을 이용약관에서 정한 회선을 초과하여 개통시킬 때에는 이용약관에서 별도로 정한 우량고객기준 등 초과 개통기준을 마련하고, 그 기준을 엄격하게 적용하여 개통하여야 한다.

4. 피심인은 시정명령을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시정명령 이행계획서(외국인 명의로 가입된 회선으로 합법 체류기간이 만료되거나, 사망 등 피심인의 이용약관상 이용정지 대상인 외국인 명의의 가입 회선에 대한 조치방안 포함)를 방송통신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5. 피심인은 시정명령 이행기간 만료 후 10일 이내에 시정명령 이행결과를 방송통신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6. 피심인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과징금을 부과한다.
 - 가. 금 액 : 52,000,000원
 - 나. 납부기한 : 과징금 납부명령을 통지받은 날로부터 20일 이내
 - 다. 납부장소 : 한국은행 국고수납 대리점

이 유

1. 일반현황



2. 사실조사 결과

피심인이 제출한 자료 및 현장조사 등을 통하여 다음과 같은 사실을 확인하였다

가. 외국인의 명의를 도용하여 이용계약을 체결한 행위

- 2014. 1.부터 2014. 5.까지 선불 이동전화 개통업무를 수행하면서 수집·보관하고 있던 외국인등록증 등 외국인 신분증 사본을 이용하여 가입신청서를 임의로 작성하는 등의 방법으로 외국인 1,321명의 명의로 총 1,321회에 걸쳐 선불 이동전화 서비스에 가입 시키고, 2012. 6.부터 2014.12.까지 우리나라를 출국·사망한 후 또는 체류기간이 만료된 외국인 2,050명의 명의로 이동전화 서비스에 신규 가입시켰다.

나. 이용약관에서 정한 회선을 초과하여 법인 선불 이동전화 서비스에 가입시킨 행위

- 2012. 6.부터 2015. 1.까지 선불 이동전화를 10회선 초과하여 개통한 법인 중 이용약관상 우량고객기준에 해당하지 않은 [REDACTED] 등 11개 법인 명의로 1,670회선을 초과 개통시켰다.

< 이용약관 >

제5조 【이용신청에 대한 승낙의 제한】

① 회사는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신청에 대하여는 승낙을 하지 아니합니다.

1. ~ 7. < 생 략 >

8. 법인명의로 10회선을 초과하여 개통하는 경우. 단, 요금보증보험에 가입하거나, 회사가 정한 우량고객기준에 해당하는 경우는 추가 개통 가능

9. ~ 15. < 생 략 >

3. 위법성 판단

가. 외국인의 명의를 도용하여 이용계약을 체결한 행위

- 이용자 동의 없이 서비스에 가입시킨 대리점의 행위는 법 제50조 제1항제5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2조제1항 [별표4] 제5호 나목 제1호(가입의사를 확인하지 않고 이용계약을 체결하는 행위) 위반에 해당되고, 법 제50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해당 대리점에 대한 상당한 주의의무를 다하지 않은 피심인에게 그 책임이 있다.

나. 이용약관에서 정한 회선을 초과하여 법인 선불 이동전화 서비스에 가입시킨 행위

- 이용약관에서 정한 회선을 초과하여 법인 선불 이동전화 서비스에 가입시킨 행위는 이용약관의 절차를 위반한 것으로 법 제50조제1항 제5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2조제1항 [별표4] 제5호 나목 제3호 (법령이나 이용약관에서 정한 절차를 위반하여 이용계약을 체결하는 행위) 위반에 해당된다.

4. 시정조치 명령

가. 금지행위의 중지

피심인은 법 제52조제1항제6호의 규정에 의하여 이용약관과 다르게
전기통신서비스를 제공하는 행위, 이용자의 가입의사를 확인하지
않고 이용계약을 체결하는 행위 및 법령이나 이용약관에서 정한
절차를 위반하여 이용계약을 체결하는 행위를 즉시 중지한다.

나. 시정명령을 받은 사실의 공표

피심인은 법 제52조제1항제7호의 규정에 의하여 시정명령을 받은 사실을 시정명령 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에 4단×10cm 또는 5단×9cm의 크기로 1개의 중앙일간지에 평일에 1회 공표한다. 이때, 공표내용 등은 방송통신위원회와 사전 협의를 거쳐야 한다.

공표문안

[가명]은 전기통신사업법 위반을 이유로
시정명령을 받은 사실이 있음

저희 회사 [가명]은 방송통신위원회로부터 ①선불 이동전화 서비스 개통업무를 수행하면서 수집·보관하고 있던 외국인 신분증 사본을 이용, 가입신청서를 임의로 작성하여 선불 이동전화 서비스에 가입시킨

행위, ②출국·사망한 외국인 또는 체류기간이 만료된 외국인의 명의로 선불 이동전화 서비스에 가입시킨 행위, ③이용약관에서 정한 회선을 초과하여 법인 선불 이동전화 서비스에 가입시킨 행위가 「전기통신사업법」 제50조제1항제5호를 위반했다는 이유로 시정명령을 받은 사실이 있습니다.

2015년 월 일

대표이사 ○○○

다. 업무처리 절차의 개선

피심인은 법 제52조제1항제9호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업무처리 절차를 개선하되, 구체적인 업무처리 개선내용은 방송통신위원회와 협의하여 정하여야 한다.

- 1) 외국인을 이동전화 서비스에 가입시킬 때에는 가입신청서 및 외국인 신분증(외국인등록증, 여권 등)을 제시받아 제출서류의 위·변조 여부, 계약상대방 본인임을 확인하고, 상대방의 동의를 받아 부정가입방지시스템을 이용하여 신분증의 진위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 2) 외국인의 이동전화 서비스 가입 등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한다.

가) 가입시 외국인 신분증(외국인등록증, 여권 등)의 위·변조 여부를 확인하고, 외국인 정보인증이 정확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대리점에서 부정가입방지시스템에 입력하는 데이터가 올바른 값인지 여부를 철저히 검사하도록 하며, 성명·외국인등록번호·거소신고번호·여권번호·국적코드·체류기간 등 외국인 정보인증 필수 정보 값이 변경되지 않도록 한다.

나) 이동전화 서비스를 이용 중인 외국인의 출국·사망 여부 등을 부정가입방지시스템을 통해 확인하여 법령과 이용약관의 규정에 따라 처리한다.

3) 법인 이동전화 회선을 이용약관에서 정한 회선을 초과하여 개통시킬 때에는 이용약관에서 별도로 정한 우량고객기준 등 초과 개통기준을 마련하고, 그 기준을 엄격하게 적용하여 개통하여야 한다.

라. 시정명령 이행계획서 제출

피심인은 법 제52조제1항제11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4조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시정명령을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시정명령 이행계획서(외국인 명의로 가입된 회선으로 합법 체류기간이 만료되거나, 사망 등 피심인의 이용약관상 이용정지 대상인 외국인 명의의 가입 회선에 대한 조치방안 포함)를 방송통신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마. 시정명령 이행결과의 보고

피심인은 법 제52조제1항제11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4조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시정명령 이행기간 만료 후 10일 이내에 시정명령 이행결과를 방송통신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5. 과징금 부과

피심인의 위반행위에 대하여 법 제53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정의 과징금을 부과한다.

가. 과징금 부과상한액

법 시행령 제46조, 제47조 및 「금지행위 위반에 대한 과징금 부과 세부기준」(방송통신위원회 고시 제2012-98호)제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피심인의 과징금 부과상한액은 8억원이다.

나. 위반행위별 과징금 부과

1) 외국인의 명의를 도용하여 이용계약을 체결한 행위

○ 기준금액

위반의 내용과 정도 및 위반행위의 건수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중대성이 약한 위반행위”에 해당하므로 기준금액을 5천만원으로 정한다.

○ 과징금의 결정

기준금액에 대해 위반행위의 내용과 정도, 위반기간 및 조사협조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가중 또는 감경사유를 적용한다.

위반기간이 12개월을 초과하므로 기준금액에 30%를 가산하고, 조사에 적극 협조한 점을 고려하여 기준금액에 30%를 가산한 금액에서 20%를 감경한다.

이에 따라 최종 과징금은 5천2백만원으로 결정한다.

2) 이용약관에서 정한 회선을 초과하여 법인 선불 이동전화 서비스에 가입시킨 행위

- 이용약관에서 정한 자체 내부기준이 미비하여 적발된 경우로써 고의성이 없고 위반행위의 건수가 경미하므로 금회에 한하여 과징금 부과를 유예한다.

6. 이의제기 방법 및 기간

피심인은 위 시정조치 명령에 불복이 있는 경우 행정심판법 제23조 내지 제27조의 규정에 따라 시정조치 명령을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방송통신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하거나, 행정소송법 제18조 및 제20조의 규정에 따라 동 처분을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행정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7. 결론

상기 피심인의 법 위반행위에 대하여 같은 법 제52조 및 제53조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5. 5.13.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최 성 준 (인)

부위원장

허 원 제 (인)

위원

김 재 홍 (인)

위 원 이 기 주 (인)

위 원 고 삼 석 (인)